

무역상무학회지 제31권
2006년 8월 pp. 137~153

논문접수일 2006.07.11
논문심사일 2006.07.12
심사완료일 2006.07.19

전자무역을 위한 상역부문의 혁신에 관한 연구*

이봉수**

-
- I. 서론
 - II.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
 - III. 상역부문 업무의 개관과 운영
 - IV. 상역부문 업무혁신을 위한 과제
 - V. 결론
-

I. 서론

디지털 기술로 특징지어지는 정보기술 혁명시대를 맞아 서류 없는 무역시대를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최근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요구되어 온 과제이다. 특히 어느 기업이 먼저 거래정보를 입수하고 상담에서 계약·운송·대금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무역업무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대의 이슈로 등장하면서 전자무역(e-trade)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자무역이 진행되어 오면서 전자무역 활용기법의 이해와 기술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고 이에 따라 무역업자들은 정보 교류와 업무 활용도를 높여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수출입 규모가 확대될수록 증가하는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전공 조교수.

부대비용은 무역업계나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수출입관련 복잡한 규제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수 선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1993년 전자자료교환(EDI) 통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수출입 신고의 전자화와 통합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는 단일통관 창구시스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도 무역원활화의 논의 분야 중 많은 부분이 수출입절차 및 요건을 중심으로 정보 및 서류요건의 조화와 공식절차의 간소화에 집중되고 있다.¹⁾ 그러나 수출입 신고의 경우 무서류(paperless)화가 수반되어 불법통관의 우려가 높아지고 수출입 신고시 첨부서류 자체는 종이서류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무역업자들은 수출입관련 기관간의 협력 부재로 물품에 대한 승인이나 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에 이루어짐으로서 상당한 통관지연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형식상 관세청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인식될 수 있는 상역업무도 사실상은 모두 수출입 통관과 관련되는 업무이다.²⁾ 아직까지 상역의 상당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역부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입요건 확인업무를 다루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통관 단일창구화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수출입요건 확인절차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통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중심으로 수출입요건 확인 절차를 유형화하여 각 주체의 전자자료교환(EDI) 연계 방식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역부문의 업무혁신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 전자무역 관련 서적 및 논문과 정부기관의 정책 추진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도구로 삼아 고찰하는 문헌중심의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1) WTO 무역원활화의 범위는 ① 수출입 절차 및 요건 ② 운송 및 통관화물 ③ 대금 결제 및 금융요건 ④ 자동차 및 정보 기술의 사용 등 4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2) 상역부문은 무역업체와 수출입 유관기관간의 수출입승인, 비자발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 검사, 검역서 발급 등과 관련된 수출입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II.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

1. 전자무역 추진 동향

이제 전자무역은 도입 초기 수출입 부대비용을 절감해주는 수준을 넘어 2010년까지 무역비전 계획을 실천하게 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무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특히 무역협회는 2002년부터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동안의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측면에 있어 브라우저(browser)간의 호환성이 매우 높아져 표준화·통합화를 추진하였다. 1996년 11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가 발표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기존의 서로 다른 EDI 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통합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인터넷방식의 XML/EDI 서비스는 2004년에 모든 무역절차에 확산되었고 XML기반 표준 전자문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처나 개별기업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7년까지 UN/CEFACT와 WC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ebXML기반의 표준화 정책 논의에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기수용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에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999년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의 제정과 2001년에는 전자무역을 진흥·육성하는 목적이 반영된 개정 대외무역법이 공표됨으로써 법률적 환경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특히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무체물(無體物)의 수출입 실적 인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5년에 기존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가칭)’로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환경과 국제동향을 감안함으로써 전자

무역의 개념이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³⁾

셋째, 국제 협력적 측면은 민간이 주축이 되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안을 도출해 가고 있다. 2000년 7월 출범한 범아시아 전자무역협의체(Pan Asian e-commerce Alliance: PAA)는 과거 아시아권 국가의 전자자료교환(EDI) 사업자들이 모여 무역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체로서 2005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한·일 종이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 민관실무 협의회, 한·독 IST 프로그램, 유럽지역 기업과의 전자무역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 전자무역 혁신계획의 주요 내용

1) e-Trade 플랫폼의 구축

인터넷 기반의 범국가적 무역 인프라로 기능할 e-Trade 플랫폼(platform)⁴⁾ 구축을 통해 현행 1:1 무역서비스 체제를 N:N 체제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한 전자무역 문서보관소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통해 문서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마케팅, 상역, 물류, 통관, 결제 등 모든 무역 유관기관을 국가 전자무역망으로 연계하게 된다.⁵⁾

2) 무역절차의 재설계

무역 서비스 실현을 위해 마케팅에서 결제에 이르는 무역 절차 전반을 재설계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고 단절을 방지한다. 즉 유관기관간 전자문서 유통과 정보연계의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반복적인 제출 업무를 생략하고 제3자 제출 시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전에 제공하지 못하였던 여러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자무역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서비스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축하여 무역업체별로 규모에 맞

3) 전자무역 촉진법은 전자무역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상역·외환에 치우친 관련 규정을 마케팅에서 결제에 이르는 전체 무역절차를 포괄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4) 인프라 영역은 무역문서 유통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interface), 서비스 프레임워크(framework)로 구성되며 서비스 영역은 단일창구를 통해 무역절차별 전 과정을 연계 한다.

5) 정부는 전자무역혁신계획(2007) 1단계 사업으로 2006년 5월까지 전자신용장(e-L/C)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시행하며 2007년부터 선하증권, 내국신용장,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등 무역관련 문서도 전자화할 방침이다.

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3) 공유 및 협력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심으로 해외 마케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의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상역부문에서는 수출입요건 확인 서비스를 개선·공유하기 위하여 무역업체 중심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 간 서류없는 무역 실현을 위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자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 및 APEC, ASEM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유럽국가와의 민간 협력사업 지원한다.

4) 법제도 개선

업계의 활용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가칭)’로 전면 개정하여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혁신체계를 정립한다. 마케팅,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업계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별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한다. 특히 전자무역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에 대한 요건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반적인 무역 서류의 전자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규정이 어려운 서류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반영시킨다.

III. 상역부문 업무의 개관과 운영

상역부문 관리의 공고체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공고와 개별법에 근거한 통합공고로 이루어져 있다. 수출입공고가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라고 한다면 통합공고는 경제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물량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이 대부분이며 통합공고상의 수입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용인되고 있다.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상호 독립적이므로 수출입공고에서 제한품목

이 아니라 할지라도 통합공고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없으며 양공고 체계에 의한 제한 내용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⁶⁾

본 연구에서는 집중적인 분석을 위하여 상역부문의 통합공고상 수출입요건 확인업무의 운영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출입요건 확인업무의 정의

수출입요건 확인업무는 통합공고상의 46개 개별법에 의하여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무역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전후 단계에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목적은 무역업자가 국가안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사회안정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련 법규에 대한 의무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공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균형 있는 무역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상의 통합공고에 따라 요건확인품목은 관련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충족하여야만 수출입이 가능하며 이러한 통합공고상의 주요 수출입 요건을 수출입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현재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은 관세청 전산망 코드기준으로 약 150개 기관이 있다.

2. 수출입요건 확인업무의 현황과 구축 계획

수출입요건 확인절차는 관세청과 대부분 요건확인 기관간에는 전자자료교환(EDI)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출입업자와 요건확인기관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편이나 팩스(fax)를 통한 종이서류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요건 확인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무역업체에게 제공되는 전자적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점도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주요 요건확인기관별 전자 민원서비스를 구축 중이나 전체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관련

6) 전순환, 무역실무, 한울출판사, 2006. 1, p.285.

7) 관세법 제226조

법령들이 기존 종이 서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자적 서비스의 확대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다.⁸⁾

산업자원부는 2006년까지 전자무역 플랫폼에 요건확인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요건확인기관, 관세청 등과 연계하여 무역업체 중심의 수출입승인·추천 절차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기밀·보안업무 수행, 업무폐지 예정기관은 제외하고 기존 전자민원서비스 실시 기관도 시스템 구축시 연계할 예정이다.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처별 산재·관리되는 요건확인관련 상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할 수 있는 요건확인업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부처·기관별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다.⁹⁾

<표 1> 수출입 요건확인 전자민원서비스 연도별 구축계획

'03년도(1단계)	'04년도(2단계)	'05년도(3단계)	'06년도(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형(ASP방식) 공통Frame 개발 ◇ 기관·세관간 전송시스템 공통모델 개발 ◇ 전자 민원시스템 구축(1차) ○ 통합형: 3개기관 ◇ 기관·세관간 전송시스템 업그레이드 적용(1차) ○ (사)농약공업협회 등 15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민원시스템 구축(2차) ○ 독립형: 3개기관 ◇ 기관·세관간 전송 시스템 업그레이드 적용(2차) ○ 동공업협동조합 등 5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e-Trade플랫폼 연계 ◇ 전자 민원시스템 구축(3차) ○ 독립형: 1개기관 ○ 통합형: 3개기관 ◇ 기관·세관간 전송 시스템 업그레이드 적용(3차) ○ 추가 10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e-Trade플랫폼 연계 ◇ 전자 민원시스템 구축(4차) ◇ Life Cycle관리시스템 구축 ◇ 검사, 검정, 인증 기관 정보연계 ◇ 추천 배정량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 4.8억 원	소요예산 : 6억 원	소요예산 : 6억 원	소요예산 : 8억 원

자료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3.6)와 전자무역혁신계획(2004.9)에서 요약

8) 현행 관세법령상 수출입신고 및 첨부서류의 제출과 관련된 조항은 관세법 제226조, 제232조, 제245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250조, 제236조 등으로 과악된다. 따라서 신고인과 관세사간 또는 신고인과 관세청간 서류의 제시·제출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각 조문에서 전자문서의 활용이 수용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9)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로 단일통관창구 구축을 추진하였다. ① 신고 항목의 유사·중복 정도가 높은 세관, 해양수산부에의 신고 정보 통합·조정 ② 검사 신청 정보의 단일창구 제출 추진 ③ 수출입업체의 추가요구 정보에 대한 단일창구 제출 추진

3. 수출입요건 확인업무의 운영 유형

현행 수출입요건 확인업무는 각 부문별로 요건확인의 목적과 요건확인의 수행과정,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관리와 처리의 방식이 다양하여 운영 절차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¹⁰⁾ 본 연구에서는 검사 또는 검역의 존재 여부, 사전검사나 사전인증 부여절차 존재 또는 통관직전 현품에 대한 검사절차 존재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1) 서류심사

수출입요건 확인 중 가장 간단한 유형으로 대부분 서류 확인만으로 절차가 종료된다. 이에 해당되는 확인기관은 현재 총 11개로 대부분 요건확인기관의 1개 부서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담당자 1인에 의해 처리된다.

허가 신청단계에는 수출추천서 신청도 해당되며, 허가증 발급단계에는 추천서, 확인증, 신고증 발급 등이 포함된다.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신고 또는 허가 신청 → 허가증 발급 → 통관 → 결과 통보 순이다. 이 유형은 업무처리 절차가 간단하여 가장 빨리 전자자료교환(EDI) 연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사전검사

이 유형은 서류심사 확인에 추가적으로 사전허가 또는 인증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며 사전허가나 인증 담당부문과 수입요건 확인 부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이에 해당되는 확인기관은 총 23개이며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허가신청 → 심사 → 검사결과 발급 → 수출입 승인 신청 → 승인서 발급 → 통관 → 수출입 현황보고 순이다.

10) 산업연구원, 통관단일창구 기반마련을 위한 수출입요건확인업무 개선방안 연구, 2003. 12. p.14-24.

3) 현물검사

이 유형은 서류심사 확인에 검역 또는 검사단계가 추가된 형태로 서류심사에 이어 현물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같은 기관의 두 군데 이상의 부문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2개의 확인기관이 해당된다. 그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국외반출 승인 신청 → 승인서 발급 → 통관 → 검역신청 → 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선적/출항 순이며 수입의 경우 국내반입 승인 신청 → 승인서 발급 → 검역신청 → 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통관 → 국내 판매 순이다.

4) 사전·사후 현물검사

이 유형은 통관 전 사전검사와 통관 후 사후검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건 확인기관은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로 중고자동차만 해당된다. 그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허가신청 → 조건부 수입통관 → 기술검토 → 안전검사 → 자기 인증 → 수입통관 → 검사 → 검사증 또는 인증확인서 발급 → 등록 및 판매 순이다.

4. 수출입요건 확인업무의 운영 방식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수출입 업자와 수출입요건 확인기관, 관세청간의 전자자료교환(EDI) 연계 여부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이서류 방식

수출입업자, 요건확인기관 및 관세청 사이에 전혀 전자자료교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방식으로 요건확인 기관 수는 12개이다. 전자자료교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요건확인기관의 지역적 산재성으로 인한 어려운 경우, 연계의 실익이 없거나 해당 물품이 국가기밀사항인 경우이다.

2) 일부 EDI 연계 방식

요건확인기관과 관세청간에는 전자자료교환 연계가 되지만 수출입업자와 요건확인 기관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요건확인기관 수는 18개이다. 가축이나 축산물과 같이 수출입업자들이 기관 방문을 통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절차 처리가 이루어지는 농축업 분야품목에 해당된다.

3) 전부 EDI 연계 방식

모뎀이나 웹(web)을 통하여 수출입업자와 요건확인기관 및 관세청사이에 전자자료 교환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요건확인기관 수는 11개이다.

IV. 상역부문 업무 혁신을 위한 과제

1. 지원기반의 구축

1) 지원대책의 강화

상역부문은 각종 요건확인이 중심이며 업무특성상 외부영향에 따라 업무의 존폐 가능성이 높아 정보화 추진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당해 기관의 예산 문제로 그동안 정보화 추진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투입이나 수혜자의 비용 부담을 통하여 요건 확인 기관의 예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진행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¹¹⁾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웹(web)방식 전자자료교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요건확인기관의 전산화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부처는 요건확인기관의 관련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확인 절차의 전산화, 수수료 감소에 의한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11) 안병수, 수출입통관에 있어 전자문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4. 8, p.9.

나아가 상역부문에 있어 자료 요건의 조화는 상당한 기술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관한 추진 방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지침이 개발되어 회원국들에게 보급되어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단일창구체제의 구축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단일창구(single window) 체제의 구축은 사용자가 한 번의 통관신청을 하면 수출입요건 확인업무를 포함한 모든 수출입절차가 일괄처리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나 수출입요건 확인제도의 수행은 그 특성상 전문화된 관련 정부부문 산하기관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이러한 분산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¹²⁾ 그러나 해당 업무 수행상 세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물품, 특히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또는 세관장의 통관자료 제공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수출입요건 확인업무 처리과정이 관세청과 해당 정부 부문사이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건확인 관련 정부 부문들이 범국가적인 단일창구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정부 부문에 비해 통관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통관창구 단일화를 위한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

앞으로 단일창구 체제가 구축되면 제출된 정보, 서류와 제세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무역업체는 통관과 화물반출에서 이익을 얻고, 공급사슬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역부문의 개선된 투명성과 증대된 예측가능성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부패행위의 잠재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이용을 감소시켜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의 행정업무에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¹³⁾

12)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는 1회의 입력과 송신으로 복수의 유관기관에 일괄 수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원스톱(one-stop)은 1회의 입력과 송신으로 복수 수속은 할 수 없지만 단말기로부터 유관기관에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13) 김중근, 전자무역의 싱글윈도우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5. 2, pp.88~89.

2. 운영체제의 보완

1) 접속시스템의 개발

관세청과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간 전자자료교환(EDI) 접속 시스템의 개발이 더딘 이유는 전산시스템 확충이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비용부담 때문에 관세청이나 수출입업자와의 전자자료교환 연계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의 소극적인 자세가 크게 작용되었다고 본다. 즉 현재에는 수출입요건 확인기관들이 수출입업자의 물품에 대한 확인 결과를 관세청에 전자자료교환(EDI) 또는 문서를 통해 관세청에 통보해 주는 수준이므로 향후에는 요건확인기관, 관세청, 수출입업자, 부가가치통신망(VAN)과 같은 관련기관간에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관세청이 여러 요건확인기관과 사용자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기존의 수출입업자가 통관과 요건확인 신청을 별도로 추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던 과도한 거래비용과 비효율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절차는 관세청의 독자적인 추진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염두에 둔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로 가능하다.

2) 서류의 간소화

요건확인업무 처리절차의 표준화와 함께 세관장 요건확인 신청시 관련서류의 전자문서화를 간소화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한다. 즉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행하는 무역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가되는 서류의 첨부를 면제하고 요건확인기관의 확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거나 제한적으로 요건확인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따라서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범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물품 수를 조정하고 절차의 단순화·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수출입업자가 고유의 전자무역 등록번호(ID)를 가지는 제도를 요건확인제도에 적용시킨다면 상역부문은 물론 전자무역 관련 모든 절차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 등록번호는 관세당국이 정보

를 제공할 때 국내법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관세당국이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밀의 성격을 지닌 상세한 사항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법·제도의 개선

1) 일반규정의 신설

수출입요건 확인업무는 관련 부처가 관掌하는 법령에 근거한 정책인 규제 절차와 관세청, 수출입업체, 수출입요건 확인기관 등 3개의 주체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입업자의 입장에서 수출입 요건확인제도는 통관을 위한 사전적·사후적 이행의무이므로 이러한 이원화가 원활한 무역업무 절차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규제 업무는 최근 교역 당사자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기관은 수출입 규제의 시행에 있어 법적 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행정 절차를 개선·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일부 수출입요건 확인업무의 경우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퇴색한 분야도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법령에 의해 제도화된 규제는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폐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범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물품 수의 조정과 절차의 단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출입요건 확인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촉진법(가칭) 및 통합공고 총칙상에 승인·추천 등 요건확인업무의 전자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일괄규정이 어려운 서류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이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 당국과 유관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정을 통하여 정보 공유의 제약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절차상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합법적인 통제(legitimate controls)’에 해당하며 어떤 수준이 ‘최소한 필요한(minimum necessary)’ 정도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

가 있다.¹⁴⁾

2) 제도적 장치의 구축

세계관세기구(WCO)의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세관과 무역업자, 세관과 정부간에 수출입허가서, 요건확인서, 검역증서 등 다양한 데이터의 원활한 교환을 위해 정보기술이 활용된 제도적 장치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업체가 단일 시스템에 정보를 전송하고 이 시스템은 다시 무역유관기관에 전송하며 승인은 정부당국에서 무역업체의 컴퓨터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자동 정보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또한 제도적 구축을 위하여 지원 센터와 교육 훈련 서비스를 실행단계 이전에 설정하여 시스템의 애로사항에 대한 반응조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관세사(신고인)는 품목분류와 관세율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요건확인사항을 체크하게 되고 무역업자(수출입신고의뢰인)는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관세사를 통하여 안내받게 된다. 이 경우 수출입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관세사가 요건확인업무를 이행함에 있어도 수출입 통관절차의 연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고 '전담관세사'를 통한 관련 요건확인 업무의 효과성에 대한 일부 의견도 고려해 볼 수 있다.¹⁵⁾

V. 결론

전자무역은 앞으로 무역거래에 우위적인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국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동북아 물류 허브(hub)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자무역을 활용한 종합적인 무역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14) 이남구,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5. 2, p.153.

15) 최용재, 관세법상 창구일원화에 관한 소고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 확인사항을 중심으로-, 관세사회보 통권129호, 한국관세학회, 2003. 8, p20.

각종 정보는 각기 특정한 시스템을 통하여 서류 형태로 상이한 유관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들 시스템 상호간 관련 정보에 대하여 조화와 공유를 하게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역자동화 기반구조가 되도록 전자무역 활성화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과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무역 서비스의 본격적인 추진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수출입 요건확인 기관들이 세관이나 수출입업자와 전산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전자무역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들과의 연계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각 기관의 수출입요건 확인사항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개선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상역부문의 혁신을 위하여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정부 예산의 투입이나 수혜자의 비용 부담을 통하여 수출입 요건확인 업무의 예산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겠으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출문서의 표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요건확인 관련 정부부문들이 관세청을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단일창구 (single window)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관세청과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간의 효율적인 접속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수출입업자의 전자무역 등록번호를 요건확인제도에 적용함으로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수출입 요건확인 절차의 전자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규정을 관련 법령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상 본고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수출입 요건확인 업무는 현재의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모든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중근, “전자무역의 싱글윈도우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2005. 2.
- 관세사회, 관세사회보, 2003. 8.
- 산업연구원, 통관단일창구 기반마련을 위한 수출입요건 확인업무 개선방안 연구, 2003. 12.
-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 공청회 개최, 2001.2.
- _____, e비즈니스 연보, 2002. 8.
- _____, 전자무역(e-Trade) 2010년 발전비전, 2002. 8.
- _____, 전자무역 확산 방안, 2002. 12.
- _____, 전자무역 포럼, 2003. 4.
- _____, 전자무역 혁신계획포럼, 2004. 9.
- 산업자원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e-비즈니스 백서, 2005. 1.
- 안병수, “수출입통관에 있어 전자문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5권 제2호, 2004. 8.
- 이남구,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2005. 2.
- 이봉수, “Single Window System을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 무역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3. 4.
- 이봉수, 사이버무역론, 형설출판사, 2002. 8.
- 전순환, 무역실무, 한울출판사, 2006. 1.
- Schnedier, Gary P., *E-Commerce*, Course Technology, 2002.
- Timmers, Paul., *Electronic Commerce: Strategies and Models for Business-to-Business Trading*, John Wiley & Sons, Ltd, 1999.
- Westland, J. Christopher and Clark, Theodore H. K., *Global Electronic Commerce: Theory and Case Studies*, The MIT Press,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Innovation of Export and Import Conditions for Electronic Trade

Lee, Bong-Soo

The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for innovation of export and import conditions and shows the various ways of overcoming them. The alternatives of export and import condi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body including customs service should participate on positive 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single window and standardization of the required documents. Second, it is required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connection system among exporter and importer, customs service, requirement confirmation agency etc. to contribute the simplification of a oper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changes for innovation and to contribute in support basis, operation structure, legal and institutional side. Practical implications regarding the innovation of export and import conditions for electronic trade are discussed.

Key Words : e-Trade, Export and Import Conditions